

수원지방법원 2019. 11. 7 선고 2019가단1547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기도 오산시장 2012. 11. 12. 접수 C(을부번호 D)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서수정

별지